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 기준 제정 방안 연구(최종 보고서)

2021.01.14.

단국대학교

연구책임자 : 박문수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1절 연구사업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사업의 목표 및 내용	1
제3절 추진전략 및 방법	6
제4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
제2장 선행연구 검토	7
제1절 연구관리의 개념과 비목별 검토	7
제2절 연구지원 평가제도 진화 과정	11
제3절 연구 관리 체계 현황 진단	19
제4절 연구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 검토	21
제3장 연구지원 기준 규정 마련 (안)	24
제1절 총칙	24
제2절 연구지원의 제반 업무 표준	25
제3절 연구자와 연구지원조직 간 역할 및 기능	32
참고문헌	36

표 목 차

<표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
<표2> 연구관리 단계별 연구지원조직 및 연구자간 주요 활동 내역	5
<표3> 대학 연구관리 이해갈등 발생 구간의 역할 분담 현황	6
<표4> 업무시간 배분 현황 비교	20

그림 목차

<그림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지원 추진 체계	3
<그림2> 1단계 연구 관리 유형	11
<그림3> 2단계 연구 관리 유형	11
<그림4> 3단계 연구 관리 유형	12
<그림5> 4단계 연구 관리 유형	12
<그림5> 연구비 간접비 지원 절차	13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사업의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확립 필요성 대두
- 동법 제24조 3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지원기준 마련의 법제화 필요

*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 기준 마련 필요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이하 "연구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연구개발기관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2. 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 제반 업무별 연구지원인력·연구지원조직·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지원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인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성과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안)을 제시 필요

제2절 연구사업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표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내용
최종목표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성과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안) 및 연구지원 업무별 연구지원인력·연구지원조직·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등 연구지원 기준을 제시
세부목표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성과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안)

2-2 연구 개발의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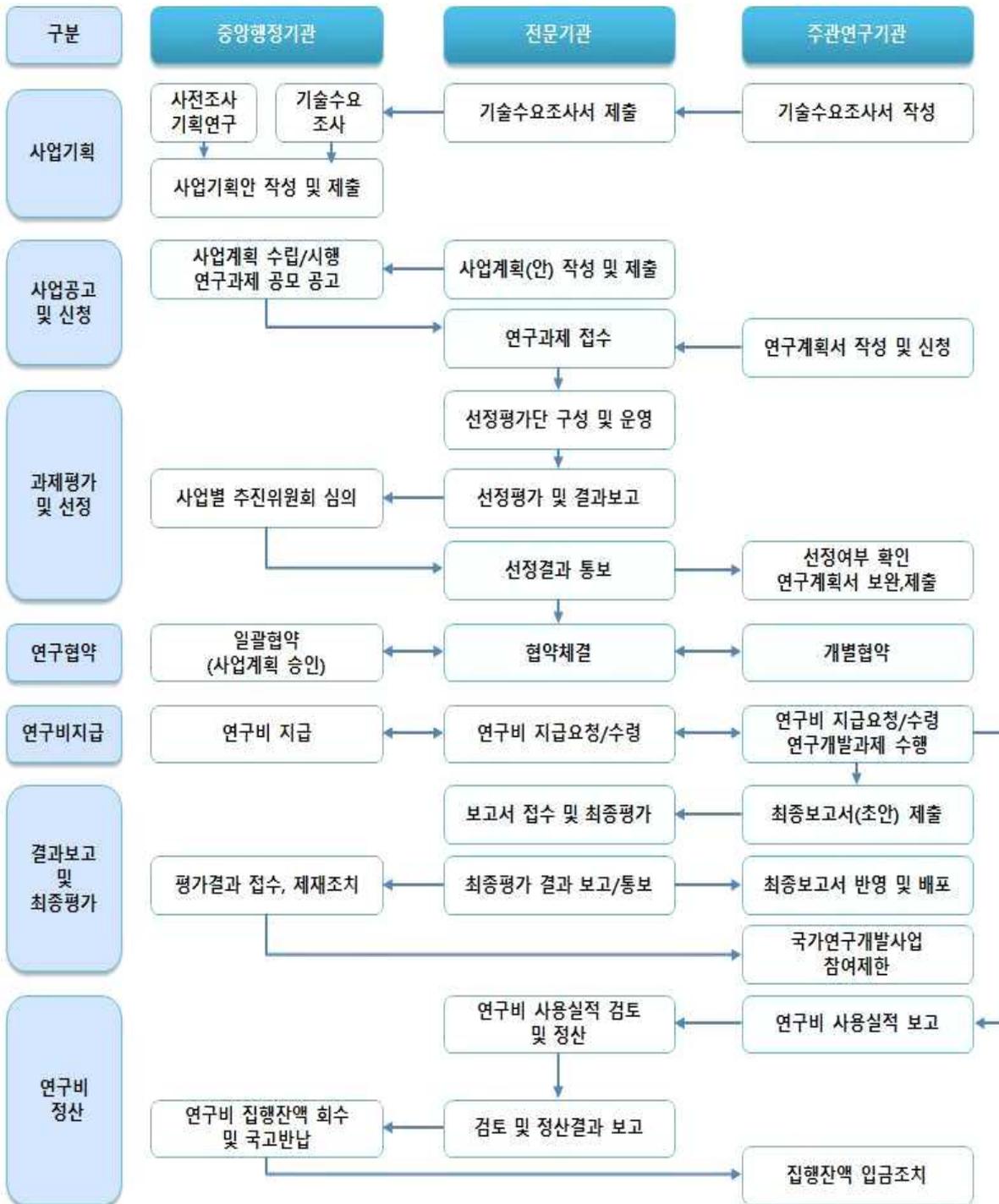
-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 현재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의 근거하여 구체화 진행
 -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성과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지원 업무의 표준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운영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외에 각 부처에 따라 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부처 간에 상이한 규정으로 연구현장의 혼란을 야기
 - 공통규범인 공동관리규정의 내용이 통일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준용되어 규정간의 부정합과 실효성의 문제가 발생

- 각 부처별 규정을 공동관리규정 중심으로 표준화 및 통일성 제고(13.1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공동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에 대해 각 부처가 통일적으로 이행
 - 부처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공동관리규정의 위임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여 각 부처별로 자율 정비

- 2020년 새롭게 진행된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에 기반한 연구지원 기준 마련
 -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의 기준 등을 준용하여 공동관리규정 연구비 운영 지침 및 연구개발 성과 관리 등의 연구지원 업무의 표준화(안) 마련

<그림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지원 추진 체계



□ 연구지원의 제반 업무별 연구지원인력과 연구지원조직, 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분석

○ 국내 대학 연구비 관리는 산학협력단이 주로 중앙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요 재원 및 과제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비 관리체계는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대학의 경우)의 협조업무 프로세스

- 연구관리의 단계별 프로세스는 산학협력단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연구책임자의 계획 상신 후에 이를 산단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 이는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간 동일수준의 행정 업무가 존재하며 협업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화가 구조화되어 있음

<표2> 연구관리 단계별 연구지원조직 및 연구자간 주요 활동 내역

구분	주요 활동 내역
과제 공모와 공모정보 제공	기술 수요조사서의 작성
	연구과제 공모 관련 정보의 수집
	교내 연구과제의 공모정보 제공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연구계획서 관련 서류 작성
	연구계획서 적정성의 검토
	연구계획서 제출
협약 체결과 연구비 청구	협약서의 검토
	협약의 체결
	연구비의 청구
연구과제의 등록	연구과제의 등록과 정보입력
	연구비와 연구원의 등록
연구비의 집행관리	연구비카드의 관리
	연구개발 관련 물품 계약, 검수, 지급의 관리
	인건비의 집행
	직접비의 집행
연구계획의 변경	간접비와 이자의 집행
	연구 지원기관의 승인여부 검토
	연구 지원기관의 승인과 신청
결과의 보고	연구자 내부 승인 신청과 관리
	최종결과보고서의 검토
사용 실적의 보고	최종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비 부정집행의 관리	연구비 사용실적의 검토와 보고
	산학협력단의 자체 감사

구분	주요 활동 내역
	대학 감사실의 일상 감사
	외부기관의 감사

- 연구자와 연구지원조직간의 역할 분담과 해당 분쟁 소지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 지침 마련 진행

<참고, 연구자 및 연구지원조직간 이해갈등 발생 구간 및 분담 현황>

- 이해갈등이 발생하는 구간의 역할 분담 현황을 보면 연구자와 연구관리자간 공동분담과 연구관리팀의 주요 역할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공동분담의 역할이 많았던 구간에서 갈등의 구간 발생) 연구자와 연구관리자 상호의 이해와 배려의 문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연구관리팀의 주요 역할의 부문에서 갈등의 구간 발생) 학사조직의 연구관리의 기능 강화를 통해 사전 검토 및 확인이 필요

<표3> 대학 연구관리 이해갈등 발생 구간의 역할 분담 현황

갈등발생 구간	역할 분담 현황(%)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공동 분담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8.7	33.4	23.3	34.4
연구과제의 등록	0.1	56.7	19.8	22.9
연구비의 집행관리	4.2	67.3	6.4	22
사용 실적의 보고	0.1	61.8	2.6	34.5

- 연구개발기관의 체계적·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기준을 하나로 통일
 - 표준매뉴얼(과기부 제정)을 모든 부처의 연구비 관리에 일괄 적용

-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 관련 개선 현황과 이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및 부처별 활용 강화
- (기존) 17개의 연구비관리시스템 → (개선) RCMS 이원화 통합, Ezbaro
- 국정과제로서 연구지원역량 강화차원에서 부처간 연구개발 칸막이의 제거와 데이터 기반 과학정책의 추진, 공급자 위주 연구관리에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서비스 전환, 전문기관 연구관리 혁신 및 전문성의 강화 추진 등

제3절 추진전략 및 방법

- 출연연, 대학, 기타 기관에 대한 온라인 화상회의 및 인터뷰 실시 등
- '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분석을 활용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하며, KISTEP 및 과기정통부 등 주기적인 의견 공유를 위한 월례회의 진행

제4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 출연연, 대학, 기타 기관에 대한 온라인 화상회의 및 인터뷰 실시, 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분석 등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책임과 권한 명확화 방향 수립
- 체계적인 연구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국가R&D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 기대성과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책임과 권한 명확화
- 효율적인 연구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유기적인 조직체계 구성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연구관리의 개념과 비목별 검토

1. 연구비 관리

□ 연구비의 개념 및 특징

○ 연구비의 근거 및 항목 구성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근거 확인 가능
-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인 ‘출연금’을 ‘연구비’로 정하고 이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 연구비의 비목 및 세목, 세세목을 구분한 것임. 여기에서 비목은 연구 개발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가 속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군별로 표기한 대분류 항목을, 세목은 비목의 구성요소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표기한 중분류 항목으로, 그리고 세세목은 세목을 다시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표기한 소분류 항목을 의미

○ 연구비의 계약 형태에 따른 구분

- 위와 같은 비목으로 구성된 연구비의 계약의 형태에 따라 ‘협약연구비’, ‘연구장려금’, 및 ‘계약연구비’로 구분(조성표, 1997).
- ‘연구장려금’은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며 자금과 연구기자재, 서비스 등을 연구자에게 지원하는 방식
- ‘협약연구비’는 연구수행 중 상당한 수준 정부 개입이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용되어 연구 활동이 기술적 및 관리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거나, 타 연구과제와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정부 개입이 가능
- ‘계약연구비’는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자산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정부가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인 경우로 이는 다시 정산 형태에 따라 연구 종료 후 전문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정산하는 ‘원가정산연구비’와 전문기관에서 별도의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정액연구비’로 구분(박재간, 2007)

○ 연구비 사용원칙

- 첫째,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으로 초기 연구계획서의 작성 시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필요한 연구비를 계상하는 것을 의미

- 둘째,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으로 연구비를 연구목적과 계획에 부합되게 집행하는 것을 의미
- 셋째, 연구비의 집행기간의 적합성으로 연구비를 협약된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수행
- 넷째, 증빙자료의 객관성으로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전자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를 통해 증빙하며, 당해과제 연구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증빙자료를 보존 요구

○ 연구비 관리 주체별 권한과 책임

- 대학은 연구개발의 수행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관리 책임자로서 연구개발비의 사용과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연구개발비의 관리자 지정, 협동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비의 정산, 연구자를 위한 기타 연구지원 인력, 집행잔액 회수 및 결과 보고,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등을 수행
- 연구비관리자는 연구기관장의 위임을 받고 연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
- 금융기관의 예치증서(통장), 장부, 증명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연구기간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
- 기관별 회계감사 부서장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일상감사 및 자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
- 최종적으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사용과 관리를 하며, 참여 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등을 결정

○ 연구수행 단계

- 연구 시작단계에서 대학의 장은 연구비로 구입한 자산 관리자와 연구비관리자를 지정하고, 연구개발비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연구비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고,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2개 이상일 경우 효율적으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른 자금과 분리된 연구비 통장계좌를 개설
- 연구비계좌에 연구비카드를 연결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연구비카드를 관리
- 연구 수행단계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내용 증명을 위한 필요 증명서류를 구비하고 이를 관리
-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 비목을 구분하고 일자별로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www.rndcard.re.kr)에 등록
- 연구개발비의 집행증명은 소속연구기관의 자체적인 회계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명
- 회계와 관련한 부서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과 회계검사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연구비 집행관련 증명서류는 해당 과제가 종료된 후 최소 5년간 보존

- 연구 종료단계에는 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위탁과제, 협동과제의 연구비 정산을 실시 후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
- 사용잔액, 이자와 정산잔액의 반납 시 과제별, 기관별로 반납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제별 집행했던 잔액의 입금 및 출금현황에 대해 정부부처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보고하고, 반납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첨부

○ 한국의 연구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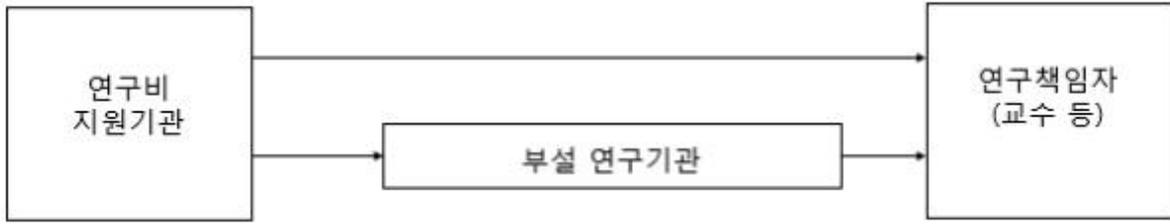
- 첫째, 교수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 반면, 미국의 경우 참여 교수의 인건비가 인정되고 있다. 이는 계약기간이 아닌 여름학기에 인건비 지급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에게 금전적 유인책으로 작용
- 둘째, 직접비에 대하여 연구과제와의 연관성을 요구하며, 연관성이 약한 경우 연구 간접비에 포함하여 직접비의 범위가 비교적 넓게 규정
- 셋째, 영국은 혼동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비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연구과제와의 관련성을 확실히 입증
- 넷째, 미국은 연구비지원 결정이전의 연구비에 대해 연구지원금에 허용원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구비지원 결정이전의 연구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실정
- 다섯째, 미국과 영국의 경우 학교에 대한 연구 간접비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연구 간접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직접비에 기관별 고시비율을 곱하여 연구 간접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이 차별점(박재간, 2007)

□ 연구 관리의 유형

○ 연구 관리의 발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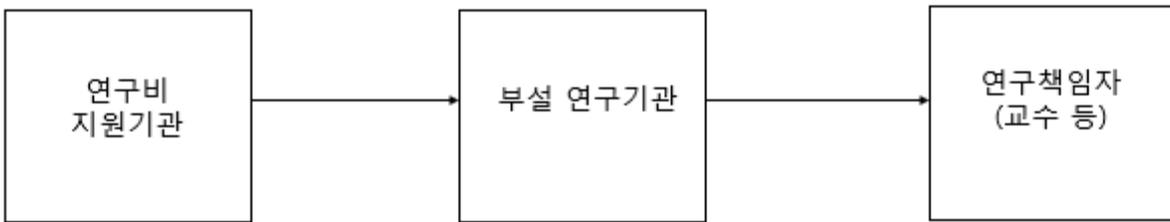
- 1단계는 ‘개인별 관리체제’이며 연구책임자 및 외부의 연구비 지원기관이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정부와 대학의 부설연구소장 또는 총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 연구비가 연구책임자의 개인 계정으로 입금되어 연구비의 지출을 직접 관리하면서, 외부 통제 메커니즘의 부재 상태로, 이로 인해 연구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단계

<그림2> 1단계 연구 관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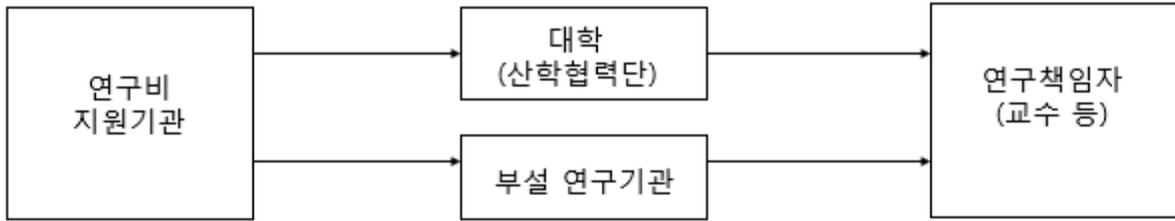
- 2 단계는 ‘분산형 관리체제’ 이며 부설 연구소장이 연구계약의 주체가 되어 계약체결하고 연구비는 부설연구기관 계정으로 입금되어 부설연구소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체계
- 부설연구기관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나 부설연구기관은 연구비 흐름의 단순히 경유지의 역할을 하며, 대학의 종합적인 연구비 관리체제 정립이나 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통적인 관리기준이나 절차 부재로 각 부설연구기관 관리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며, 내부통제의 메커니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다만, 이러한 경우 부설연구기관이 전체적인 연구비 중앙관리 수준에 부합될 수 있는, 즉 모든 연구비를 중앙관리 하기에는 연구기관의 연구비가 너무 커 체계적인 분산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형과 달리 구분 필요

<그림3> 2단계 연구 관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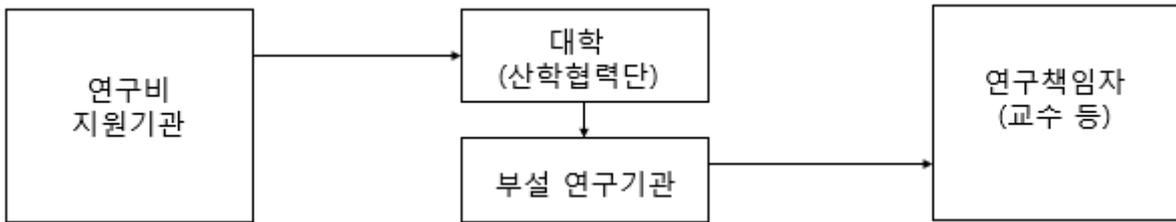
- 3 단계는 집중과 분산, ‘혼합형 관리체제’ 이며 정부수탁과제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중앙 집중적으로 연구비를 관리하고, 그 외 남은 과제들은 기존 연구기관(부설)에서 연구비 관리
- 권한 위임 수준의 차이 및 관리 구조상의 차이 등으로 대학마다 차이가 존재
- 내부통제시스템의 발전에도 통제구조가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로, 중복되는 관리통제행위 (이원적 관리통제) 등 관리비용의 비효율 발생

<그림4> 3단계 연구 관리 유형



- 4 단계는 ‘중앙집중형 관리체제’이며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중앙에서 모두 통제하는 방식
- 연구비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의 표준화를 구현하고, 모든 부설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연구비 집행 및 대학전체의 연구비 관리통제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
- 연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단일한 조직체계로 구성된 중복적인 통제활동의 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준 및 절차 제정의 합리성과 연구 책임자의 대한 위임과 책임, 권한에 대한 합의와 수용이 중요

<그림5> 4단계 연구 관리 유형



제2절 연구지원 평가제도 진화 과정

1. 1단계 2003~2015년 Two Tracks

- 연구 지원 평가제도는 1994년에 시작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2003년에 시작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의 방식으로 2015년 통합되기 전까지 두 트랙으로 진행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의 추진 배경

- 대학의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증가하고 있으며,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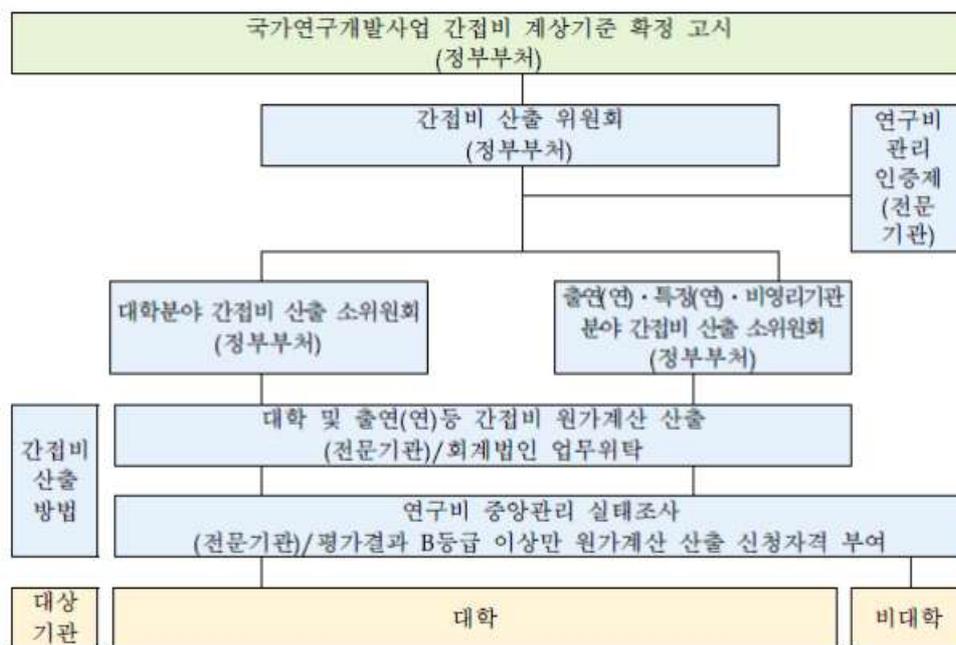
근 그 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연구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 정부 R&D 투자는 2011년 14조 8,528억 원 → 2012년 16조 244억 원 → 2013년 16조 8,777억 원으로 증가
- 2013년 정부 R&D 예산 규모는 2012년 대비 5.3% 증가
- 2011년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은 15,660백만 달러(OECD, 2013)
- 대학의 연구비 관리 실태 평가를 위해 연구비 중앙관리의 실태조사 운영 중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 평가는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특히, 2013년 신정부의 출범으로 예상되는 정책적인 변화에 연구지원 및 관리 기관의 표준모델정립 및 연구비 관리 문제는 주요한 핵심 과제로 연구비의 중앙관리 실태조사 개선은 중요한 관심사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추진 목적

- 첫째, 연구비를 중앙관리 체제로 구축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연구비 관리능력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 둘째, 조사결과에 따라 개별 기관의 연구 간접비 지원의 비율을 차등하게 적용하기 위함
- 아래 그림은 대학에 대한 연구 간접비 지원 절차를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정리

<그림5> 연구비 간접비 지원 절차



[자료] 임석재 (2016)

- 대학이 연구 간접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간접비의 비율 즉, 간접비의 계상기준이 확정 고시가 되어야 순차적으로 진행

- 전문기관의 경우 고시된 기준을 근거하여 대학 연구 간접비를 지원. 출연(연) 등의 경우에도 간접비 원가계산 산출이라는 회계적인 절차로 간접비 산출과 계상기준의 확정 고시가 가능하지만 대학의 경우 반드시 실태조사에 참여한 후 그 결과가 B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간접비 원가계산 산출이 가능
- 물론 대학의 경우도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연구 간접비의 비율을 3% 적용되지만 대학 연구의 간접비 최고 비율이 32.86%인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의 대부분이 조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의 개요

- 대학의 개인별 연구과제의 중앙집중형 관리방식 도입 및 1994년부터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실시(교육부, 1994)
- 중앙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정부지원금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정부 부처에서 대학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의 간접비 비율에 차등을 적용하여 제도의 효과 향상
- 여기서 간접비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때 공통으로 비용이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하기 어려운 비용을 의미(임석재, 2016).
- 대학이 연구 간접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간접비의 계상기준에 대해 확정 고시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은 고시된 기준을 근거로 하여 대학의 연구 간접비를 지원
- 출연(연) 등의 경우 간접비 원가의 계산산출 등 회계적인 절차로 간접비 산출과 계상기준의 확정 고시가 가능함. 하지만 대학의 경우 실태조사에 참여한 후 그 결과가 B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간접비 원가계산 산출을 시행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의 연역

-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대학에 도입되기 시작
- 1987년에 서울대학교가 연구처를 출범, 1988년에는 연세대학교와 아주대학교가 대학본부에 연구처를 신설
- 1992년에 고려대학교가 연구교류처를 신설하였으며 1994년부터 각 대학들이 중앙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
- 그러나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의 시작은 2000년부터 진행(이민형,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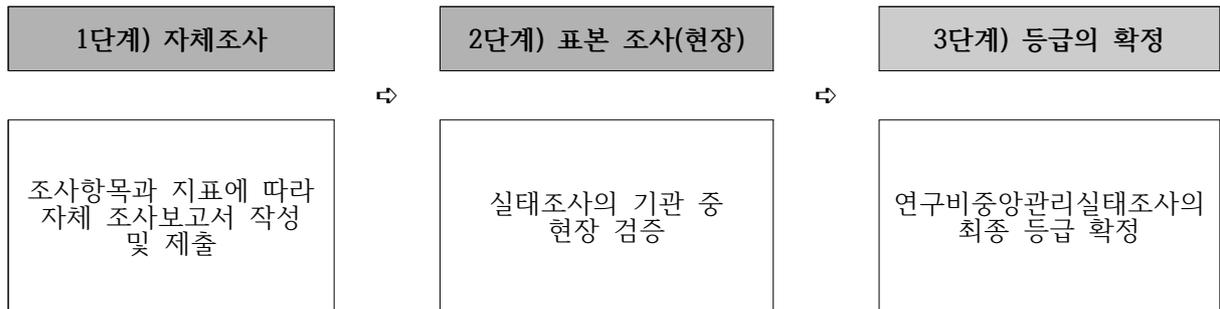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주요 내용

- 1994년 도입 이후 매년 대학 등의 관리능력을 정부로부터 위탁된 산하 전문기관인 연구재단에서 각 기관의 실태조사 참여 신청을 통해 등급별로 간접비율을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A, B 등급의 대학은 희망하면 원가계산으로 간접비율 산출
- 2011년 164개, 2012년 190개, 2013년 193개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수주하는 대부분의 4년

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연구비 규모와 관계없이 단일지표로 평가되지만, 연구비 규모에 따라 평가지표가 설계되었다는 것 때문에 신청기관의 불만이 형성(임석제, 2016)

○ 연구비 중앙 관리 실태조사 단계별 추진내용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활용

-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에 따라 간접비 차등 지원
- 일괄지원방식으로 A등급은 20%, B등급은 15%, C등급은 10%, D등급은 5%, 미참여는 3%
- 연구비 중앙관리와 간접비의 원가계산 방식 연계
- 원가계산방식의 간접비 산정 신청 자격에 대한 연구비 중앙관리의 조사결과에 따라 B등급 이상으로 한정
- 중앙관리 조사의 등급을 원가계산방식의 지급률 결정 반영
- B등급인 경우 간접비 지급률에서 3% 감률을 적용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정부부처: 실태조사의 기본계획 확정과 최종등급의 확정 발표
- 전문기관: 실태조사의 자체조사보고서 접수와 검토, 예비등급 안내, 이의제기 접수·처리, 현장점검 등
- 연구기관: 자체조사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기 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간접비산출위원회를 통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관별 간접비의 비율 심의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선행연구

- 서판길(2005)은 대학 연구비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이며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해 정책을 기초 설계하여,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대학 공통의 회계기준과 간접연구비 계상기준의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
- 이성우 (2006)는 연구자의 회계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연구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비 중앙관리에 대한 평가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각 대학의

실태조사에 적용할 모형을 구축

- 김종호 외(2007)는 일본과 미국의 유사한 연구비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고, 기존 연구비관리 평가체제에서 제시된 지표에 관한 타당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검토하여, 국내의 진행된 인증제 및 실태조사의 평가지표를 비교하여 연구비의 중앙관리 제도 평가를 위한 모형을 제안
- 서관길(2008)은 대학의 간접비 지급 및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연계 강화를 주장하였으며,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 등급을 원가계산 방식으로 간접경비 산정의 신청자격 요건으로 실태조사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경우로 제한하여 대학분야 간접비 원가계산을 신청하게 하여 평가결과의 차이에 따라서 간접경비의 지원 비율에 차이를 두도록 제안
- 송완흡(2009)은 연구비 규모에 따라서 연구비관리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여 연구비 규모가 큰 기관의 경우에는 연구비 관리의 인증제와 내부 프로세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에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의 개발을 제안
- 이재원(2010)의 연구는 연구비 중앙관리 표준모형을 대학 연구비관리의 현장 실무자의 관점에서 제안한 것이 다른 연구와 구별되는 특징
- 조성표(2011)는 연구비 관리정책을 간접비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해당 연구를 통해 미국 주요 대학의 간접비 관리체계의 분석과 미국과 한국의 간접비 기준을 비교
- 지정규(2011)는 연구를 통하여 대학분야의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연구자 윤리의식의 향상 및 연구자 대상 교육 강화와 연구비 부정사용의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연구비 중앙관리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 주장
- 홍대식(2011)은 연구를 통해 연구간접비의 ‘원가보전’의 개념 정립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성과 연구간접비는 연구수행의 과정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원인력 및 연구시설의 유지를 위해 발생한 연구수행 기관의 실경비로 대학에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경비임을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
- 손충근(2011)은 연구를 통하여 대학 산학협력단과 인력의 조직보강, 연구자의 양질의 서비스의 확대와 유기적인 연구비관리 생태계 구축, 산학협력단의연구비관리 역량강화, 연구자의 연구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연구기획평가사 제도의 부활, 연구비관리 코칭제 등 대학연구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
- 조성표(2012)는 실태조사 및 인증제의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연구 간접비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선언적이며 포괄적 의미를 규정에 담아 연구간접비의 대한 정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제시
- 이상환(2012)은 연구비 중앙관리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체계의 개선과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자 우선의 제도를 정착 주장

- 임석재(2013)는 2013년 실태조사에 참여하였던 기관(19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및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개요

- 민간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의 투자에 대한 시장실패를 정부가 보완해 주기 위한 국가의 역할로 인해 발생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는 연구과제 단위 ‘사후 외부정산제’의 문제점과 그 한계가 대두되고, 정산업무의 위탁에 따른 전문성과 투명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추진(구명희, 2012)
- 연구지원 평가제도가 연구비에 대한 집행을 중심으로 한 사후검증 위주였다면,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사전 예방에 초점(황영구 외, 2009)
-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에 따른 정산업무의 폭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
- 정부 차원에서 연구비의 관리 수준이 높은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인증함으로써 하나의 연구비 관리 우수 모델을 제시하여 이후 연구비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관들도 우수 기관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설계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연역

- 인증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연구관리 인증제도’라는 용어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등장
- 2005년 1월 인증제 추진방안에 대해 연구소, 산업체,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 이후에 출연(연)과 대학, 부처별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무회의가 개최됨.
- 2005년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에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비
- 2005년 4월 12개 연구개발 수행의 정부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5월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계획추진이 확정
- 이후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하고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평가를 통해 해당 년도말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기관을 선정
- 2006년 1월에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기관으로는 포항공대, 성균관대 등 2개 대학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개 출연(연)이 첫 선정
- 이후에도 연구비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증은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비관리의 수준이 높았던 대학 및 출연(연)이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 선정되었거나, 3년의 인

증 기간이 종료한 경우 재인증

- 이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을 통하여 전체적인 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 의도가 반영된 결과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과 의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 중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 등에 연루되어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증제는 2010년을 마지막으로 실시한 후 2013년 종료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주요 내용

- 연구비관리의 우수한 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은 크게 세 가지의 정책적 성과보수가 수여
- 첫째,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가 면제되며,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기관 및 외부 기관에 대한 정산보고를 면제하는 것으로 자체정산이 가능
- 그러나 평가 불량 과제나 감사원, 언론기관 등에 의하여 연구비 부정집행이 적발된 과제의 경우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정산 시행
- 둘째, 연구 간접비 계상비율을 상향 조정
- 연구기관별 연구 간접비의 비율을 산출할 때 실 소요원가로 계상된 비율인 3%p를 추가로 반영
- 셋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에서 우대
- 대학의 경우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정부부처 실태조사 평가 없이 인증기간 동안 A등급을 부여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에 관한 선행연구

- 이길우(2004)는 인증제의 시행을 위한 시스템의 설계 연구에서 현재까지의 연구비 관리정책의 변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관리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의미르 설명하고, 인증제도를 세 개의 평가분야(연구비집행절차, 내부통제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세부지표를 구성
- 김병태(2006)는 인증제 시범실시 결과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
- 김병태(2008)는 2005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7년에 확대 실시한 인증제도의 인증평가 기준이었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대학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출연연구기관의 특징을 비교·분석
- 구명희(2010)는 정책 설계 초창기부터 실무적으로 관여하였던 담당자로서 해당 연구에서 인증평가 결과에 대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눈 후 정책의 추진과정 및 평가결과,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제시
- 구명희(2012)는 인증제도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추가제시
- 2011년을 마지막으로 인증제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된 상황에서 구명희(2014)는 인증제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평가로 메타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설계된 메타평가 모형을 인증

평가에 적용하고 분석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증평가 시스템을 만들고자 시도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의 인증제 비교 분석

- 정책의 대상 범위는 실태조사가 인증제를 포괄
- 두 제도의 경우 상호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실태조사라는 기초적 제도를 통하여 대학의 연구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하게 시켜가면서 그중에서 연구비관리의 수준이 매우 높은 대학을 선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인증제로 고려
- 다시 말하면, 연구비 중앙관리의 실태조사가 산학협력단이 중심이 되는 연구비 중앙관리에 집중된 제도라면,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연구관리와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 우수기관 인증에 초점을 두어 높은 유사성을 보임.

2. 2단계 20015~2018년 연구비 관리 평가체계 통합 운영

○ 연구자의 연구몰입의 환경조성과 연구성과 창출에 이바지하고 연구지원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연구지원 역량 지표는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예방·조치 중심으로 축소 조정하고, 연구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연구행정 지원역량평가로 확대

- 2015년에는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및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통합하였으며, 이후 15년 연구비 관리체계는 181개 기관, 172개의 대학, 그리고 9개의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최초로 평가를 시행
- 2016년에는 187개의 기관, 176개의 대학과 11개의 출연(연) 등에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시행
- 2017년은 2016년에 진행된 기관, 대학 출연(연)등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미흡 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시행하
- 2018년에는 기관, 대학, 출연(연)의 수가 늘어나 190개 기관, 172개 대학, 18개의 출연(연) 등으로 확대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 그동안 평가대상의 연구기관들이 행정적인 부담을 지적해 온 '자체 감사'와 '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 관리' 지표의 배점에 대해 각각 12점에서 11점으로 변환, 5점에서 3점으로 변환
- 연구기관이 연구 지원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을 별도 지표로 도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7월 서류평가·현장평가를 진행하고 10월에는 이의신청·재평가를 거친 후 11월에는 최종 평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
-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더 많은 연구 간접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대진행

제3절 연구 관리 체계 현황 진단

1. 기존의 연구 관리 체계 제도의 문제점 진단

□ 기존의 연구 관리 체계에 대해 연구자의 연구 몰입환경 저해 측면, 대학 연구관리 역량 부족 측면, 그리고 정책적 수요 측면인 세 가지 관점으로 문제점을 제시 분석

○ 연구자의 연구 몰입환경 저해 측면

- 국내의 연구책임자들은 해외 연구자에 비해 연구과제 수주와 관련된 연구개발 행정 및 연구비 관리 등에 더 높은 부담을 느낌
- 미국 대학교수들은 2012년 기준 업무시간의 50.2%, 한국 연구자들은 62.7%를 연구개발 외 행정업무에 소요하고 있어 미국 대비 연구몰입 환경이 낮음(김이경 외, 2016)
- 한국의 연구자는 연구개발 관련 행정에 업무시간의 39.2%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별히 과제수주를 위해서는 23%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김이경 외, 2016)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지원 연구과제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연방기관, 대학 및 비영리 연구기관, 연구정책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력기구 FDP(Federal Demonstration Partnership)를 통해 1986년부터 유연한 연구비 운영 및 행정 체계화 공동 추진 진행(신정범, 2017)

<표4> 업무시간 배분 현황 비교

연구 외 분야 업무	미국 연구자(2012년)	한국대학연구자(2016년)
연구개발	49.8%	37.3%
연구개발 외 행정분야	50.2%	62.7%

[자료] 김이경 외(2016)

- 비슷한 연구 결과로 국내 대학 연구책임자 중 91%가 연구관리 행정소요 부담으로 연구몰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국연구재단, 2017)
- 연구비 집행 관리에 관한 연구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연구비 감사 대응, 행정 대응, 결과 보고의 순으로 나타나 연구개발 외 행정 업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의견 추론이 가능(이재훈 · 이나라, 2017)
- 연구자가 책임을 느끼는 순위는 연구 목표달성이며 그에 반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순위는 감사 대응 등의 행정 업무의 부담이 커 이에 대한 개선 요소가 큰 것으로 파악
- 이러한 현황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의 연구비관리체계의 충실성 평가는 연구자와 연구 관리자 간 상호신뢰회복에는 한계가 있으며, 두 주체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측정하지도

못하는 실정

- 이에 따라 연구관리 지원역량 평가제도(가칭)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관리자 간 상호신뢰회복 및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평가체제로 개선 방향 제시

○ 심각한 대학 연구 관리 역량 부족 측면

- 대학 연구관리의 핵심은 산학협력단으로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을 위한 활성화 법 제 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1항」의 내용에 의거 산학연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회계 관리 등의 연구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 이들 대학의 연구관리 전담인력 1인당 관리대상 연구비는 25억원으로 연구자들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1인당 정규직 1명으로 환산하면 62억원으로 관리 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
- 산학협력단 전체 인력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에 상응하여 연구비의 증가세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연구자 관점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또 다른 감독기관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연구관리자는 폭주하는 연구자의 민원 해소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악순환이 발생

○ 정부의 정책적 수요측면

-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이행을 위해서는 연구행정을 효율화시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
- 2018 12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 개선(안)』이 심의·확정하는 등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d)
-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와 자율에 비례한 책임성 제고와 연구자·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의 ‘3대 영역, 9대 과제’를 원칙으로 투자를 강화
- 특히,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하여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관리 기능 혁신과 연구책임자 조직간의 원활한 역할 분담과 연구관리 역량의 수준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따라서 연구 몰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지원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필요하며, 기존 연구비 관리 체계의 충실성 중심으로 평가된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제도를 연구관리 지원역량 평가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를 강화하여 실효성 제고 검토

제4절 연구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 검토

1. 연구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 법안 및 조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 제25조(연구지원 체계의 평가)
-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 제2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 제38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31조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
- 제36조(기술료의 사용)
- 제53조(연구윤리의 확보)
- 제49조(의견수렴 지원시스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

- 제10조(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
- 제19조(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 제15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 제12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

연구지원역량평가 지침서 및 해설서 지표

- I.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 1.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
- II.연구자의 처우개선 정도4.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 III.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7.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IV. 연구제도 운영의 합리성 9.공동관리규정 준수 여부
- III.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6. 대표적 우수성과 8.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 II.연구자의 처우개선 정도 3.연구원 근로계약
- V.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10.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2. 고시 마련을 위한 법령 구조 검토

- 선행연구 및 법제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3장 16개조의 고시 법령 구조화를 진행
 - 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를 포함함.
 - 2장은 연구지원의 제반업무표준으로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성과관리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함.
 - 3장은 연구자와 연구지원조직 간 역할을 분담하고 각 프로세스별 활동내용을 제시함.

<표5> 고시 마련을 위한 법령 구조(안)

<p>1장 총칙</p> <p>1조 목적</p> <p>2조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 조직 - 연구지원 인력 - 연구지원 체계 - 통합정보시스템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역할
<p>2장 연구지원의 제반업무표준</p>

3조 연구개발비의 연구지원 기준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 통합정보시스템과 기관 연구지원시스템 연동
- 연구지원 조직 구성 및 전담조직의 운영
- 연구지원조직 교육훈련 및 정규직 및 전임직화 지원

제4조(연구시설·장비비 연구지원 기준)

- ① 연구시설장비 자체심의위원회 구성 및 중복성 검토
- ② 연구시설장비 중앙구매제도 구축 연구시설장비 중앙구매제도 구축

제5조(연구 성과관리 연구지원 기준)

- ① 연구원 직무보상
- ② 연구윤리 및 부정행위 집행처리
- ③ 연구 성과의 통합정보시스템의 탑재 및 관리 방안

제 6조(연구지원 강화를 위한 연구자 처우개선)

제 3장 연구자와 연구지원조직 간 역할 및 기능

제 7조(과제공모 및 정보제공)

제 8조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제 9조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청구)

제 10조 (연구과제 등록)

제 11조 (연구비 집행관리)

제 12조 (연구계획 변경)

제 13조 (결과보고)

제 14조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제 15조 (연구노트작성)

제 16조 (연구비 감사)

제3장 연구지원 기준 규정 마련 (안)

제 1 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개발성과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지원”이란 법 2조 7항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연구수행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검수), 자산관리, 재무(회계), 감사, 성과관리 등을 포함한다.
2. “연구지원기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효율적인 연구지원 제반업무 수행을 위해 지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성과 관리,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 나. 연구지원 제반 업무별 연구자의 역할과 기능·연구지원인력·연구지원조직
 - 다.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연구지원조직”이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연구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하며 세부 조직은 연구기획, 협약, 정산, 감사, 구매, 자산, 검수, 재무 및 회계, 성과 관리 등의 별도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4. “연구지원인력”이란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되어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이란 법 시행령 3조에 의거하여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과 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신물질, 표준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 2 절 연구지원의 제반 업무 표준

제3조(연구개발비 연구지원 기준)

- ① 연구개발기관은 예산, 협약과 정산, 구매와 검수, 재무와 회계, 성과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연구지원시스템(이하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 ②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은 전산화하여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저장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관리 시스템의 구현
 3. 연구개발기관 부서 간 정보의 연계

4. 통계제공을 위한 연구관련 데이터 및 자료의 검색과 출력
5. 연구개발과제의 기초정보, 신청서 및 협약서 등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 및 자료의 수집 및 보관
6. 연구 보안 관련 시스템의 구현

③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별도예산을 편성하고, 전담인력 또는 업무위탁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을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 또는 통합Ezbaro)과 연동시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 때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연동 기한은 5일 이내로 한다.

⑤ (연구지원조직의 업무) 연구지원조직은 연구기획, 협약, 정산, 회계, 구매, 자산, 검수, 재무, 감사, 성과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기획은 연구자의 발굴과 해당 학문분야 선도, 분야별 연구동향 조사 분석 및 연구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포함하며, 과제 선정에서 성과관리까지의 과제기획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협약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관과 기관과의 문서를 교환하여 맺는 계약행위를 의미한다.
3. 정산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구매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연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재료, 기타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산은 연구개발비로 취득된 것 중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유·무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검수는 연구개발비로 취득된 자산 중 요구된 규격, 수량, 품질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물건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재무 및 회계는 연구개발비의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 및 관리하여 기록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8. 감사는 연구개발비의 집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조사, 점검 및 검증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성과관리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확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⑥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지위보장 및 교육훈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배치, 안정적 지위보장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조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 연구지원조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지원인력의 고용보장 등 업무의 연속성과 지위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은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내부교육 및 외부 전문기관 교육을 말하며, 세부교육은 각 목과 같다.
 - 가. 연구기획, 재무·회계, 협약, 정산, 구매, 자산, 성과관리, 감사 등 연구비 및 연구지원 직무와 관련된 내·외부 교육
 - 나. 보안관리교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정한 보안관리에 관한 교육
 - 다. 연구윤리교육은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관련된 내용
 - 라. 기타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한 관련 교육

제4조(연구시설·장비비 연구지원 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조직내 전담부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매와 계약 행위(이하 “중앙구매”라 한다)를 통해 처리

해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재료에 관하여 적정 수준의 중앙 구매 단가를 책정하여 구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구매 대상은 공사, 용역, 시제품, 시약 등을 포함한다.

제5조(연구개발 성과관리의 연구지원 기준)

-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한 기여도에 따라 참여연구원에 게 직무발명 보상을 지급함에 필요한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도는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도가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업무의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확정하여 기여도를 산정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통해 정부와 함께 연구지원 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와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1. 연구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관리 체계
 -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한 연구중심대학과 타 유형 연구기관간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차등 적용
 - 3. 연구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전담 조직과 인력
 - 4.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의 제출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의 등록 및 기탁 체계
 - 5.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의 기술료 합의

절차 및 이전 성과

6. 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 절차 및 성과 배분

- ④ 연구개발기관과 정부는 공공연구성과 개방과 공유 촉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성과 관리와 활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⑤ 연구지원조직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에도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 정보를 상시 입력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⑥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윤리에 관한 사항 및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검증,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맞게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구윤리 내부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
-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대상 인간의 보호
- 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대상 동물의 보호
- 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안전성 확보

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내부규정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나.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의 접수 및 관련 기구·부서 또는 전담인력
- 다.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방법 및 기간
- 라.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통보, 보고에 관한 사항
- 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 마. 제보자의 신분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 바. 조사의 기록과 보관
 - 사.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아.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운영 프로그램
3. 연구개발기관은 수행하는 연구주제에 맞게 다음의 4대 위원회를 설립하여 상설로 운영해야 한다.
 - 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
 -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윤리위원회
 - 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안전위원회
 4. 연구개발기관은 연구 윤리 예산확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 가. 연구윤리교육
 - 나. 연구윤리 4대위원회 운영
 - 다.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검증
 - 라. 표절예방 프로그램
 - 마. 기타 연구윤리 관련 활동
 5.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신고할 수 있는 제보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의 각 목을 준수해야 한다.
 - 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여러 매체 활용
 - 나.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제보 허용
 - 다. 제보자가 인사 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성 보장
 6.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접수 또는 인지 후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순서를 거쳐야 한다.
 7.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 제보자, 피조사자, 조사위원의 주어진 권리를 보장하고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각 목의 명시된 내용을 준수

해야 한다.

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14 조에 제보자의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방지를 위한 익명성 보호

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22조에 따라 제보자의 조사 위원에 대한 회피, 기피, 제척 권리보장

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15조에 따라 피조사자의 익명성 보호

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15조에 따라 피조사자의 소명권 및 이의신청 기회 보장

마.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31조에 따라 피조사자로부터의 조사위원 익명성 보호

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23조에 따라 조사위원의 사전조치권 및 진술요구권의 권한 보장

8.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부정행위 판정 시 연구부정행위 유형을 특정하고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여 연구자의 고의성, 행위의 경중, 반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정해야 한다.

9.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연구부정행위에 비례하여 일관성 있는 징계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10.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관련 기록물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11.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주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가. 연구부정행위 유형

나.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

다.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후속처리

라. 기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

제6조(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연구지원조직은 소속기관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기관 전체에 공유하며, 그에 따라 제도개선, 시스템 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제7조(연구지원을 통한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 연구개발기관은 소속된 박사후 연구원과 전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통칭함)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부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규정의 명칭, 조항,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계약 기준규정이 기관 내 시스템에 모두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시해야 한다
3.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 3 절 연구자와 연구지원조직 간 역할 및 기능

제8조 (과제공모 및 정보제공) ① 연구자와 연구지원조직은 공지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 전에 기술 수요조사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연구비 지원기관의 공모 정보를 수집한다.

③ 연구지원조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공모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자에게 이를 통합 제공한다.

제9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연구자와 연구지원조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별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연구지원조직은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비 예산수립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이하 “연구비 지원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제 10조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청구) ① 연구자와 연구지원조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검토,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청구한다.

- ②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서 및 연구개발비 청구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 ③ 연구지원조직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비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청구한다.

제 11조 (연구개발과제 등록) ① 연구자와 연구지원조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이후 자체 연구지원시스템 내 연구개발과제를 등록하고 관리한다.

- ② 연구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참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분류 등의 세부 내용을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 ③ 연구지원조직은 등록된 연구개발과제 세부 내용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검토 후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승인한다.

제 12조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① 연구자와 연구지원조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실행을 위해 연구개발비 집행을 신청한다.
- ③ 연구지원조직은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맞게 연구개발비를 신청했는지 검토 및 검수하며, 이를 승인하고 처리한다.

다.

제 13조 (연구개발계획 변경) ① 연구자와 연구지원조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계획이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개발계획 변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지원조직에 해당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 ③ 연구지원조직은 연구개발계획 변경서를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 내부적으로 승인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청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 후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 14조 (결과보고) ① 연구자와 연구지원조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별 기준에 근거하여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별 기준에 근거하여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지원조직에 제출한다.
- ③ 연구지원조직은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점검하고, 이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제 15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① 연구자와 연구지원조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별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별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지원조직에 제출한다.
- ③ 연구지원조직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제 16조 (연구노트작성)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

라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동안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인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연구지원조직은 연구과제 종료 후 작성된 연구노트를 30년 동안 관리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 17조 (연구비 감사) ① 연구지원조직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외부기관의 감사요청 시 연구자와 함께 이를 소명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기관 내·외부의 감사 요청 시 성실히 소명한다.

③ 연구지원조직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해 외부기관의 감사 요청 시 연구자와 함께 해당 내용을 성실히 소명한다.

제 18조 (서식) 이 고시에 필요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a),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b),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안).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c), 과학기술 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안).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d), 자율과 책임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R&D 제도개선(안).
5. 구명희(2010),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한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6. 구명희(2012),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평가 및 간접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 구명희(2012), 연구비관리 인증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의 설계 및 적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 김경영·박기술(2009),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효과 분석, 「기술혁신연구」, 제31권, 제3호, pp.34-45.
9. 김병태(2006),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본격실시에 따른 시범사업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 김병태(2008),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평가결과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 김이경·김소리·윤이경(2016), 대학연구자의 행정부담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KISTEP 이슈페이퍼 2016-14.
12. 김중호·김세훈·황필선(2007). 국가연구개발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일본·한국의 대학연구비 중앙관리사례 비교를 통한 적용 가능성의 탐색, 「아태연구」, 제16권1호: 33-57.
13. 김해도(2018),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연구재단」
14. 미래창조과학부(2015),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추진계획.
15. 미래창조과학부(2016), 정부R&D 혁신방안 간담회.
16. 박상욱 (2018), 대학의 연구개발 관리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7. 박문수·박귀순·김해도·이홍우·김광제·장민석·가남희·김태홍·정진우·김민영 (2018), 산학협력단의 연구관리 갈등요인 해결에 관한연구, 「NRF 이슈페이퍼」, 2018-01.
18. 박재간(2007),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표준 연구비 산정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벤처전문기술학과」, 박사학위논문.
19. 손충근(20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간접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학위논문.
20. 서중해(2005),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및 경제적 효과, 「한국개발연구」, 83-121.
21. 송완흡(2009), 연구비 중앙관리 체계 분석을 통한 모델 개발 및 종합 관리 방안, 「한국연구재단」
22. 이민형. (2001). 대학의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 (127), 50-66.
23. 이상환(2012),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4. 이성우(2006),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5. 이재원(2010), 연구자의 연구전념 환경조성을 위한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표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6. 이재훈·이나래(2017), 연구자 중심 R&D 제도혁신 방향과 과제, 「KISTEP ISSUE WEEKLY」, 2017-02.
27. 신정범(2017), 현장중심 R&D 체계 구축을 위한 미국의 FDP 활동, 「한국연구재단」
28. 연구제도혁신기획단(2기) (2019), 현장 연구자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가 R&D 제도 혁신.
29. 이길우(2004), 연구관리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시스템 설계 연구, 「과학기술부」
30. 임석제(2013),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1. 임석제(2016), 연구비 관리제도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2. 조성표(1997), 연구과제중심제도하에서의 간접비 개념 및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33. 조성표(2011), 대학 간접비 계상기준 개선 방안, 「한국연구재단」
34. 조성표(2012), 인증제와 중앙관리등급제 및 간접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5. 지정규(2011), 대학분야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36. 한국연구재단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37. 한국연구재단 (2017),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혁신에 관한 연구, 「NRF 이슈페이퍼」, 2017-06호.
38. 홍대식(2011),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